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3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10월 12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총무과장 김영의)

□ 제안이유

○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축소·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제명 "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"를 "부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"로 변경(안 제명)
-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"15인이상 20인이내"에서 "12인이내"로 축소·조정 (안 제14조제3항)
- 각 호 외의 부분중 "각호의 1과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와"로 변경 (안제13조제1항 및 제1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

답 변 내 용

○ 동 조례가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조례 제2조 제1항 9호에 규정된 기타 주민의 권리・의무 또는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분야의 사항에 포함되는 입법예고대상사무가 아닌지?

○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위원수 조정과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호
의결	2006. 10. 19
년월일	(제131회)

제출년월일: 2006. 9. 29

제 출 자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축소·조정하여 효율 성을 높이고,
-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제명 "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"를 "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"로 변경(안 제명)
-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"15인이상 20인이내" 에서 "12인 이내"로 축소·조정(안 제14조제3항)
- 각 호 외의 부분중 "각호의 1과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와"로 변경(안제13조제1항 및 제15조)

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명 "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"를 "부천시 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"각호의 1과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와"로 한다.

제14조제3항중 "15인이상 20인이하"를 "12인 이내"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"각호의 1과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와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・과・소		실・과・소	총 무 과
입		담당과장	김 영 의
안		담당팀장	이 정 희
자		담 당 자	이해복(☎320-2508)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	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
<u>관한조례</u>	영에 관한 조례
제13조(보상조치) ①헌장에서 공표	제13조(보상조치) ①
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	
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	
보상하여야 하며, 그 범위는 다	
음 <u>각호의 1과</u> 같다.	<u>각 호의 어느 하나와</u>
1.~5.(생 략)	1.~5.(현행과 같음)
②・③(생 략)	②·③(현행과 같음)
제14조(위원회) ①・②(생 략)	제14조(위원회) ①·②(현행과 같음)
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	3
<u>15인이상 20인이하</u> 의 위원으로	12인 이내
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	
3분의 2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	
④~⑧(생 략)	④~⑧(현행과 같음)
제15조(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)	제15조(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)
제11조의 평가결과 헌장관련 업	
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	
및 공무원은 다음 <u>각호의 1과</u> 같	<u>각 호의 어느 하나와</u>
이 우대할 수 있다.	
1. · 2.(생 략)	1. • 2.(현행과 같음)